

#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1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5월 9일

발 의 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4.04.17.)한 주민조례청구(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돌봄선생님,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장, 생활복지사 및 아동돌봄교사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이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그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재가돌봄서비스 체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며, 경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자격 취득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장년층 및 노년층 여성에게 치우쳐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돌봄노동 유입을 증진하고, 돌봄노동 인력이 성별·연령 등에 무관하게 고르게 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제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돌봄제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돌봄제공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돌봄제공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관내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그 가족, 돌봄제공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용자 지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돌봄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돌봄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노동조건을 포함한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방문 돌봄노동자의 휴게보장)** ① 시장은 공공시설 등 방문 돌봄노동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방문 돌봄노동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3.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돌봄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6. 돌봄노동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7.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8.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9.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모두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돌봄노동자 중 관내 돌봄제공기관에서 총 6개월 이상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50시간 이상 근무(복수 근무

지의 경우 각 노동시간 합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지급 등)** ① 제10조에 따라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돌봄노동자는 시장에게 수당지급을 신청한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한다.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처우개선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1조의 처우개선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부도지사)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중 2호의 경우 1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1. 시의회 의원
2. 노인돌봄노동자 (또는 노인돌봄노동자 조합의 대표, 노인돌봄노동자 중 대표성 있는 사람)
3. 아이돌봄노동자 (또는 아이돌봄노동자 조합의 대표, 아이돌봄노동자 중 대표성 있는 사람)
4. 장애인돌봄노동자 (또는 장애인돌봄노동자 조합의 대표, 장애인돌봄노동자 중 대표성 있는 사람)
5.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이 한다.

**제14조(돌봄노동자에 대한 보수교육)** ① 시장은 돌봄제공기관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돌봄노동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돌봄노동자의 보수교육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5조(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업무
2. 돌봄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돌봄노동자 역량 강화에 관한 업무
4. 돌봄노동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업무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sup>1)</sup> 등)	×	기시행 사업
2	제6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sup>2)</sup> )	×	
3	제8조(방문 돌봄노동자의 휴게보장 <sup>3)</sup> )	×	
4	제9조(처우개선사업 등 <sup>4)</sup> )	×	
5	제10조(처우개선수당 등 <sup>5)</sup> )	△	기시행이나 대량확대시 소요비용 발생예상 다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6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	위원회 운영비용 소요
7	제14조(돌봄노동자에 대한 보수교육 <sup>6)</sup> )	×	기시행 사업
8	제15조(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	기시행이나 대량확대시 소요비용 발생예상 다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운영비용(안 제12조)

##### 나. 전제

- 안 제13조(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전제

#### 1) 3년마다 실태조사 기시행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 '18. 6월 /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21. 6월 / 2024년 실시예정

- 서울시 필수노동자(보건의료·돌봄종사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용역 - 노동정책담당관-15647(2020. 11. 24.)호

· 기 간 : 2020. 12. ~ 2021. 6.(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역비 : 금 99,000천원(금구천구백만원)

#### 2) 각종 자료제공(성희롱 및 인권 관련 정보제공) 기시행

#### 3) 장기요양요원의 이용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1개씩 컴퓨터를 조성(센터에서 운영 관리)하여 시행 중

#### 4)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등에서 기시행

#### 5) 일부 기시행(덧붙이는 의견 참고)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사업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시설 및 시립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시설(월7만원), 시립노인요양시설(월5만원)

#### 6)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온라인 교육시스템 돌봄이름을 통해 보수교육 진행 (<https://www.edudolbom.org/edu/>)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통해 보수교육(신규종사자 e-러닝, 종사자 교육 운영 등) 진행

- (위원구성) 최대 구성인 15인 가정(공무원 3인 + 민간위원 12명)  
: 위원장(부시장) + 부위원장(민간위원으로 가정) + 당연직(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 필수위원(노인돌봄 노동자) + 위원(시의원) + 그 외(10명의 민간위원)
- (위원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유사한 위원회<sup>7)</sup>의 임기를 준용하여 2년으로 가정
- (소요금액) 참석수당 1인 200,000원<sup>8)</sup>, 업무추진경비 1인 30,000원<sup>9)</sup>, 위촉장 제작비용 1인 5,500원<sup>10)</sup>으로 전제
- (회의개최) 회의 개최 시기는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를 가정
-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라. 방법

- 서울시 위원회 관련 조례 활용, 서울시 복지정책실 유사 위원회 준용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28,749천원**(연평균 5,750천원<sup>11)</sup>)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운영비용(안 제12조)		5,783	5,700	5,783	5,700	5,783	28,749
	소계(a)		5,783	5,700	5,783	5,700	5,783	28,749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5,783	5,700	5,783	5,700	5,783	28,749

4. 덧붙이는 의견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은 향후 정책수립 과정(위원 수, 위원구성)에서 달라질 수 있음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8) 참석수당은 2시간 초과 기준인 200천원(기본료 150천원+초과 50천원)을 적용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10) 서울시 유사사업 위촉장 소요금액 준용 / 2년마다 발생

11) 5,749.8천원이나 절상하여 5,750천원으로 표시

○ 안 제10조 처우개선수당 등에 대한 의견

- 관련부서 확인결과 처우개선수당은 현재 기시행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이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함
- 다만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수혜대상은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정부기관 및 서울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 추계(최대인원 가정)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실제 정책수립 후 지원금액과 추계금액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최대 소요금액 연평균 비용 = 99,610,800천원 ~ 110,678,400천원  
 = (① 처우개선수당 × ② 수혜대상) × 12개월  
 = (1인 월 50천원 × 166,018명 ~ 184,464명) × 12

① 처우개선수당 = 1인당 월 50천원(서울시 기시행 사업 준용)  
 ② 수혜대상 = (관내돌봄제공기관 종사자 인원<sup>12)</sup>) × (6개월 이상 및 월50시간 이상 근무 비율<sup>13)</sup>)  
 → 수혜대상 중 6개월 이상 근무비율을 90% ~ 100%로 가정할 경우에 따라 필요비용이 달라짐

- 추계 금액에 대한 소견(결론)  
 · 전체 종사자 지급을 전제로 추계하였으나, 관련부서 문의결과 종사자수, 수당금액, 예산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변수에 따라 실제 필요금액과 추계금액 간의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고자료 차원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안 제15조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의견

-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활용함<sup>14)</sup>에 따라 신설센터 임차료 발생은 없으나 늘어나는 수혜대상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부서 및 센터 문의결과 현시점에서 늘어나는 대상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존 지원대상인 어르신 돌봄종사자와 향후 늘어나는 지원대상(장애인활동지원사<sup>15)</sup>+아이돌봄 관련 종사자<sup>16)</sup>)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어 현재 책정된 1인당 지원금액으로도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움
- 또한 타 지자체(경상남도)<sup>17)</sup> 유사사례를 통한 비용추정 방법은 서울시와 규모 및 이용인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오차발생 가능성이 있어 활용하기 곤란함

12) 관내 돌봄제공기관 종사자 현황 (추정치로 변동 가능성 있음)

구분	세 부 구 분	인 원 (명)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의사 / 간호요원(간호사+간호조무사) / 영양사 / 기타	146,612
노인생활지원사	홀로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	2,908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29,331
아이돌봄 관련 종사자	아이돌보미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613
합 계		<b>184,464</b>

⇒ 184,464명 × 90%(가정) = 166,018명

- 13) 추계에 활용할 만한 객관적 통계가 없어 참고문헌을 토대로 평균근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90%를 가정  
 ⇒ 제10조(처우개선수당 등)제2항 중 기간(총 6개월 이상) 및 시간(월 5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파악할 적절한 통계 자료가 없어 임의로 비율을 가정하여 추계하였고 이에 **추계서 본문이 아닌 덧붙이는 의견에 추정금액을 참고로 제시**함
- 14) 안 제15조(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기능)제3항에 따라 기존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을 전제
- 15)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 총 29,331명 (2024.1월 기준)
- 16) 서울시 소속 아이돌보미 : 3,734명(2023년 연말 기준)  
 서울지역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현황 814명(2022년 12월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  
 서울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 1,065명(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 17) 노인·아동·장애인 분야 돌봄종사자 통합지원센터 전국 최초개소(2020년)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운영비용(안 제12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28,749천원(연평균 5,750천원)

나. 연평균 소요비용 ≍ 5,75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위원회 참석수당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 위원회 업무추진경비	900	900	900	900	900	4,500
	○ 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비용	83	-	83	-	83	249
	소계	5,783	5,700	5,783	5,700	5,783	28,749
□ 총 비용		5,783	5,700	5,783	5,700	5,783	28,749

주 : 2년마다 위촉장 제작비용 발생

- 참석수당 비용 = 4,800천원  
                   = 수당단가 × 지급인원<sup>18)</sup> × 연2회  
                   = 200천원 × 12명 × 2회
- 업무추진경비 = 900천원  
                   = 경비단가 × 지급인원 × 연2회  
                   = 30천원 × 15명 × 2회
- 위촉장 제작비용 ≍ 83천원  
                   = 제작비용 × 인원  
                   = 5,500원 × 15명

18) 위원장(부시장), 당연직(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위원(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12명에게 지급